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제도설명회

2020. 1. 8.

목 차

-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 2 안전운임 신고센터
- 3 2020년도 적용 안전운임
- 4 질의 답변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0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제도 개요

■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목적 :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여 적정 수입을 보장,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을 개선하여 **교통안전 확보**

※ '19년 기준, 사업용 화물차 등록대수(41만대)는 전체 차량 등록 수(2,339만대)의 **1.8%**이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3,025명 대비 **5.1%**(156명)로 높은 수준

■ 제도 적용대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 화물차주 : ① 개인 운송사업자, ② 위수탁 차주
- 운수사업자 : ① 운송사업자, ② 운송주선사업자, ③ 운송가맹사업자
- 화주

0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추진 경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18.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19.6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 '19.7
 -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및 차량종류 등 심의·의결 기능
 - 13명의 대표위원(화물차주 3, 운수사업자 3, 화주 3, 공익 4) 으로 구성
- 화물운송비용 조사·분석 : '19.1~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8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시행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안전운임 의결 : '19.12.12
- '20년도 안전운임 고시 : '19.12.30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 적용대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 적용기간 : '20.1.1 ~ '22.12.31 (3년 일몰제로 도입)

■ 유형

- 안전운송운임 :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임
- 안전위탁운임 :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임

■ 과태료 또는 처벌

-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 : 과태료 부과(1건당 500만원)
- 안전운임 지급과 관련,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리베이트)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 적용대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하는 철강재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 적용기간 : '20.1.1 부터

■ 과태료 또는 처벌 : 해당없음

- 안전운송원가는 화주, 운수사업자 등이 화물운송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를 말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2호)

2. 안전운임 신고센터

www.safetruck.go.kr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2020.01.08.(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설명회



1. 법적 근거 및 업무

○ 관련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9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운임 위반 신고 접수
 2. 위반사실 확인 및 관할 관청에의 통보
 3. 신고 처리상황 안내
 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홍보
 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연구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2. 안전운임 신고센터 안내

○ 홈페이지 주소 및 고객센터

홈페이지 주소 : www.safetruck.go.kr



고객센터(상담) : 1899-2793 (2번)

3. 안전운임 신고센터 업무 절차 안내

○ 신고 업무 절차



4. 신고 방법

안전운임 위반 신고서

신고 이메일 : safetruck@kotsa.or.kr

① 피 신 고 인	성명(회사명)	(대표자 : , 담당자 :)		접 수 번 호		
	업종(✓)	☐ 화주 ☐ 운송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허가 관할관청	시·군·구 (• 업종이 운송사업인 경우 작성, 필수 사항은 아니나 작성 권장)				
	사업장 주소	(전화 : , FAX :) (휴대폰 : , 이메일 :)				
② 신 고 내 역	운임 유형 (✓)	☐ 안전운송운임(화주→운수업체) ☐ 안전운송운임(화주→차주) ☐ 안전위탁운임(운수업체→차주) ☐ 왕복 ☐ 편도		운송품목 (✓)	☐ 수출입컨테이너(□ 40FT □ 20FT) ☐ 환적컨테이너(□ 40FT □ 20FT) ☐ 시멘트	
	운송구간	기점		구간거리 (가장생년차)	km 레이더 지도 추천 거리 기준 (차종 : 중 - 4축 이상 차량)	
		행선지				
		공편컨테이너 장치장				자동차 등록번호
	운송계약일	년 월 일		운송일시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지급받은 운임	원		안전운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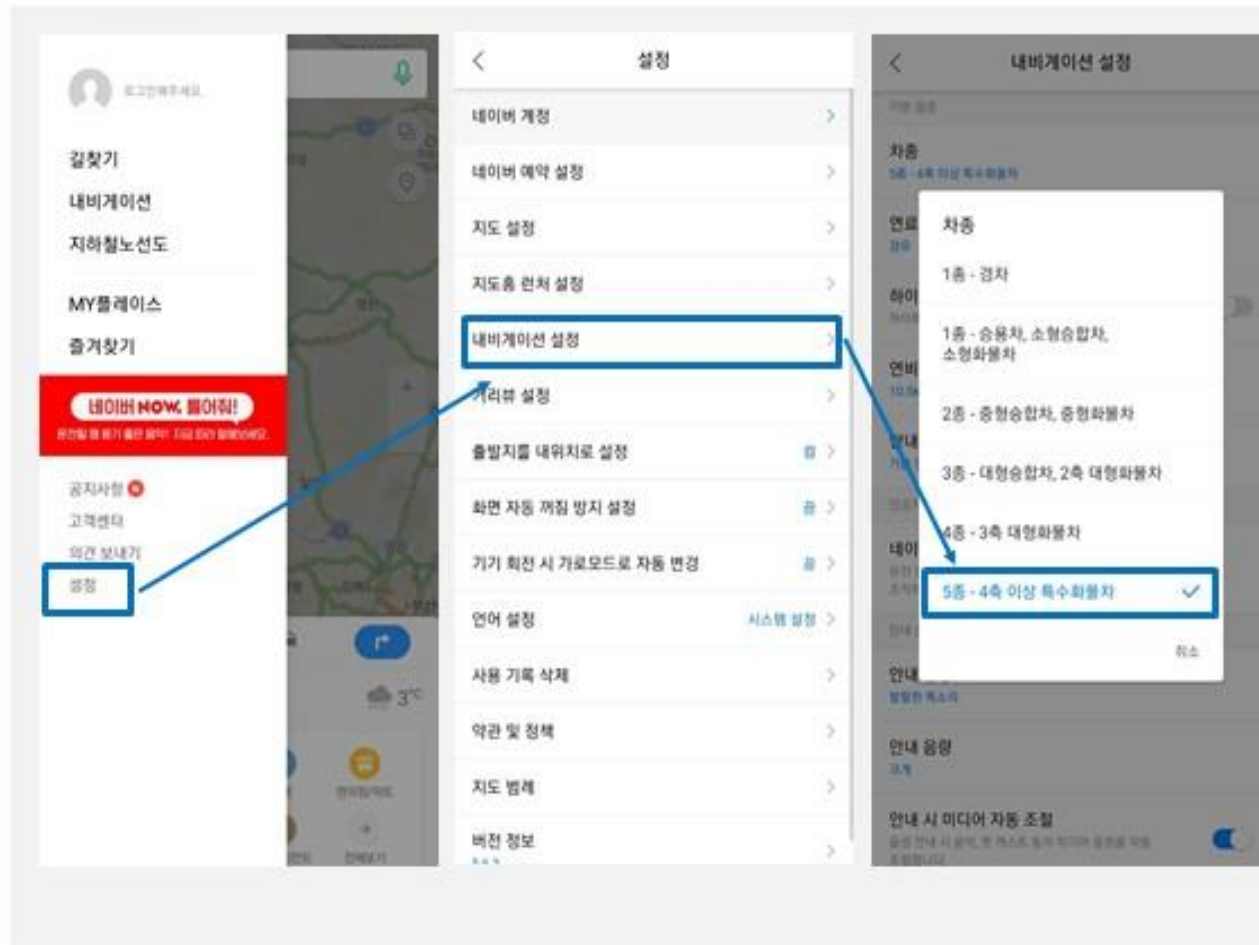
③ 신 고 인	성명(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가주지 주소)				
	연락처	전화 : , FAX : , 휴대폰 : , 이메일 :			
	업종 (✓)	☐ 화물 차주 ☐ 위·수탁차주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운수 사업자 ☐ 운송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운송사업 허가번호				허가 관할관청	시·군·구
신고인 제출서류		1. 피신고인 및 신고인 사업자등록증 2. 운송계약서, 거점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지급받은 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점(상차지) 및 행선지(하차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야 합니다. 3. 기타 안전운임 지급 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신고의견 (상세히 작성)		별도 페이지로 작성 가능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의5 및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 동의합니다. ☐ 동의 거부합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장 귀하					

위반 신고는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의견(별도 페이지 작성 가능)을 상세히 작성하여
충분한 제출서류(증빙자료)와 함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로 신고

※ 계도 기간 중에는 이메일로 신고 가능, 향후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 접수 예정(2월 중)
(본 서식은 2020년 1월 2일 기준 서식으로 향후 변경 가능)

5. 참고 사항

네이버 지도 추천 거리 (안드로이드 기준)



고시 “참고사항” 중

1. 컨테이너(화적화물 포함)

1. 다. 항만이 있는 시내 운송 및 운임표에 없는 구간의 경우 실제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거리의 측정은 네이버 지도 어플리케이션(내비게이션 설정에서 차종을 5종으로 설정 후 거리 산정)을 활용하여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II. 시멘트

2. 거리의 측정은 네이버지도 추천거리(차종: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적용)를 기준으로 한다.

6. 신고서 예시 (수출입 컨테이너, 왕복)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지급 위반 신고서(예시)

① 외 신 고 인	성명(회사명)	(주)교통화물기업 (대표자 : 김화주, 담당자 : 박대리)		접수번호		
	업종(✓)	☒ 화주 ☐ 운송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허가 관할관청	서울 시·도 강남 시·군·구 (* 업종이 운송사업인 경우 작성, 필수 사항은 아니나 작성 권장)				
	사업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00로 00 (전화 : 054-000-0000, FAX : 0500-000-0000) (휴대폰 : , 이메일 :)				
② 신 고 내 역	운임 유형 (✓)	☐ 안전운송운임(화주→운수업체) ☒ 안전운송운임(화주→차주) ☐ 안전위탁운임(운수업체→차주) ☒ 왕복 ☐ 편도		운송품목 (✓)	☒ 수출입컨테이너(40FT □ 20FT) ☐ 환적 컨테이너(40FT □ 20FT) ☐ 시멘트 (□ 26톤 기준 □ 1톤 기준)	
	운송구간	기점	부산신항	구간거리 (가장짧은거리)	163 km 네이버 지도 추천 거리 기준 (차종 : 5종 - 4종 이상 특수화물차)	
		행선지	경상북도 김천			
		공컨테이너 장치장	원도에 한함			
	운송계약일	2020년 1월 4일		운송일시	2020년 1월 8일 14시 (~ 2020년 1월 8일 17시)	
	지급받은 운임	400,000원		안전운임	433,007원	
③ 신 고 인	성명(회사명)	김철수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123-45-00000 (1970. 12. 31)	
	사업장 주소 (거주지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XX로 X길 XX				
	연락처	전화 : 051-000-0000, FAX : 0500-000-0000, 휴대폰 : 010-0000-0000, 이메일 : aaaaaa@naver.com				
	업종 (✓)	화물 차주	☐ 위·수탁차주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수 사업자	☐ 운송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운송사업 허가번호	동래-개인-2019-003		허가 관할관청	부산 시·도 동래 시·군·구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나. 부산신항기점(왕복)

(본 운임표의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행선지		구간거리 (km)	40FT 컨테이너		20FT 컨테이너	
시·도	시·군·구		안전위탁 운임(원)	안전운송 운임(원)	안전위탁 운임(원)	안전운송 운임(원)
경상북도	김천시	168	390,104	433,007	355,381	394,119



6. 신고서 예시 (수출입 컨테이너, 편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지급 위반 신고서(예시)

① 피 신 고 인	성명(회사명)	(주)화물안전운송사 (대표자 : 김운송, 담당자 : 박과장)		접수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11-12-12345 (123456 - 7891234)
	업종(✓)	☐ 화주 ☒ 운송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허가관할관청	경기 시·도 수원 시·군·구 (※ 업종이 운송사업인 경우 작성, 필수 사항은 아니나 작성 권장)				
	사업장 주소	경기도 수원시 ㅇㅇ로 000 00 (전화 : 054-000-0000, FAX : 0500-000-0000) (휴대폰 : , 이메일 :)				
② 신 고 내 역	운임 유형(✓)	☐ 안전운송운임(화주→운수업체) ☐ 안전운송운임(화주→차주) ☒ 안전위탁운임(운수업체→차주) ☐ 왕복 ☒ 편도		운송종목(✓)	☒ 수출입컨테이너(☐ 40FT ☒ 20FT) ☐ 환적 컨테이너(☐ 40FT ☐ 20FT) ☐ 시멘트 (☐ 26톤 기준 ☐ 1톤 기준)	
	운송구간	기점	부산신항	구간거리	446 km	
		행선지	경기도 가평군	자동차 등록번호	서울99바0808	
		공컨테이너 장치장	외항ICD 원도에 한함			
	운송계약일	2020년 1월 4일		운송일시	2020년 1월 8일 14시 (~ 2020년 1월 8일 17시)	
	지급받은 운임	450,000원		안전운임	481,874원	
③ 신 고 인	성명(회사명)	물품기업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123-45-00000 (1970. 12. 31)	
	사업장 주소 (가주지 주소)	강원도 춘천시 XX로 X길 XX				
	연락처	전화 : 051-000-0000, FAX : 0500-000-0000, 휴대폰 : 010-0000-0000, 이메일 : aaaaaa@naver.com				
	업종 (✓)	화물 차주	☒ 위·수탁차주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수 사업자	☐ 운송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운송사업 허가번호	춘천-일반-535		허가 관할관청	강원 시·도 춘천 시·군·구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2)

나. 부산신항기점(편도, 공컨테이너 장치장 : 외항ICD)

(본 운임표의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행선지		40FT 컨테이너		20FT 컨테이너	
시·도	시·군·구	안전위탁 운임(원)	안전운송 운임(원)	안전위탁 운임(원)	안전운송 운임(원)
경기도	가평군	528,874	690,835	481,874	583,196



6. 신고서 예시 (환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지급 위반 신고서(예시)

① 피 신 고 인	성명(회사명)	(주)화물안전운송사 (대표자 : 김운송, 담당자 : 박과장)		접수번호	
	업종(✓)	☐ 화주 ☒ 운송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허가 관할관청	강원 시·도 철원 시·군·구 (업종이 운송사업인 경우 작성, 필수 사항은 아니나 작성 권장)			
	사업장 주소	강원도 철원군 00로 000 (전화 : 051-000-0000, FAX : 0500-000-0000) (휴대폰 : , 이메일 :)			
② 신 고 내 역	운임 유형(✓)	☐ 안전운송운임(화주→운수업체) ☐ 안전운송운임(화주→차주) ☒ 안전위탁운임(운수업체→차주) ☐ 왕복 ☐ 편도		운송품목(✓)	☐ 수출입컨테이너(□ 40FT □ 20FT) ☒ 환적컨테이너(□ 40FT □ 20FT) ☐ 시멘트 (□ 26톤 기준 □ 1톤 기준)
	운송구간	기점	부산신항 남측	구간거리 (기원경산제)	17 km 네이버 지도 추천 거리 기준 (차종 : 5톤 - 4축 이상 특수차량)
		행선지	부산신항 북측		
		공인컨테이너 장치장	편도에 한함		
	운송계약일	2020년 1월 4일		운송일시	2020년 1월 8일 14시 (~ 2020년 1월 8일 17시)
	지급받은 운임	20,000원		안전운임	31,137원
③ 신 고 인	성명(회사명)	박찬호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123-45-00000 (1970. 12. 31)
	사업장 주소 (거주지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XX로 X길 XX			
	연락처	전화 : 051-000-0000, FAX : 0500-000-0000, 휴대폰 : 010-0000-0000, 이메일 : aaaaa@naver.com			
	업종 (✓)	화물 차주	☐ 위 수탁차주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수 사업자	☐ 운송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운송사업 허가번호	의성-개인-2019-12		허가 관할관청	경상북 시·도 의성 시·군·구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가. 부산신항 내(환적)

(본 운임표의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구간	구간거리 (km)	40FT 컨테이너		20FT 컨테이너	
		안전위탁 운임(원)	안전운송 운임(원)	안전위탁 운임(원)	안전운송 운임(원)
남측-남측, 북측-북측	13	26,379	30,321	23,818	27,377
남측-북측	17	31,137	35,790	28,114	32,315

6. 신고서 예시 (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지급 위반 신고서(예시)

① 피 신 고 인	성명(회사명)	(주)OO시멘트 (대표자 : 김화주, 담당자 : 박대리)		접 수 번 호		
	업종(✓)	☒ 화주 ☐ 운송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허가 관할관청	경상북 시·도 김천 시·군·구 (업종이 운송사업인 경우 작성, 필수 사항은 아니니 작성 권장)				
	사업장 주소	경북북도 김천시 00로 00 (전화 : 051-000-0000, FAX : 0500-000-0000) (휴대폰 : , 이메일 :)				
② 신 고 내 역	운임 유형 (✓)	☒ 안전운송운임(화주→운수업체) ☐ 안전운송운임(화주→차주) ☐ 안전위탁운임(운수업체→차주) ☒ 왕복 ☐ 편도		운송품목 (✓)	☐ 수출입컨테이너(□ 40FT □ 20FT) ☐ 완컨테이너(□ 40FT □ 20FT) ☒ 시멘트 (□ 26톤 기준 □ 1톤 기준)	
	운송구간	기점	강원도 화천군	구간거리	147 km (네이버 지도 추천 거리 기준 (차종 : 5종 - 4속 이상 특수자동차))	
		행선지	서울 마포구	자동차	장원99자0505	
		공컨테이너 장치장	면도에 한함	등록번호		
	운송계약일	2020년 1월 4일		운송일시	2020년 1월 8일 14시 (~ 2020년 1월 8일 12시)	
지급받은 운임	250,000원		안전운임	286,236원		
③ 신 고 인	성명(회사명)	(주)OO물류 (대표자 : 정운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987654-3219876)	
	사업장 주소 (거주지 주소)	강원도 화천군 XX로 X길 XX				
	연락처	전화 : 033-000-0000, FAX : 0500-000-0000, 휴대폰 : 010-0000-0000, 이메일 : aaaaaa@naver.com				
	업종 (✓)	화물차주	☐ 위 수탁차주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수사업자	☒ 운송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			
운송사업 허가번호	화천-일반-1344		허가 관할관청	강원 시·도 화천 시·군·구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본 운임표의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구간거리 (km)	운송(왕복) 거리 (km)	안전위탁운임(원)		안전운송운임(원)	
		26톤 기준	1톤 기준	26톤 기준	1톤 기준
147	294	298,062	10,349	286,236	11,000



7. 제도 안내

○ 제도의 종류, 운임유형, 적용대상 등

▶ 제도 종류

화물차안전운임제 (위반시 과태료 처분)
화물차안전운송원가제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

▶ 운임 유형

- **안전운송운임** :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
- **안전위탁운임** :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



▶ 적용 대상

- **화물차 안전운임** :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BCI)
- **화물차 안전운송원가** : 피견인 자동차(철강재), 일반형 화물차 자동차 (해당 화물자동차로 운송할 수 있는 품목)

▶ 처벌 규정

- 화물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5백만원)
- 불법적인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계도 기간

○ 계도 기간 운영 지침

안전운임 적용대상

'20.1.1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운송행위

계도기간

'20.1.1 부터 '20.2.29까지

운영지침

계도기간 중('20.1.1~2.29) : 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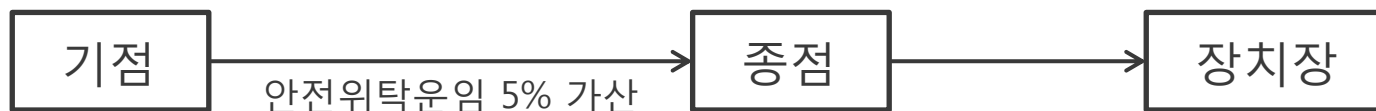
계도기간 후('20.3.1~) : 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운임을 지급한 경우와, 계도기간 중 발생한 지급 위반행위(시정조치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3. 2020년도 적용 안전운임

안전운임 운임표 고시

■ 컨테이너 운임

- 컨테이너 왕복운임 : **12개 기점별 운임, 거리별(km) 운임**
(부산북항, 부산신항, 인천항/인천신항(안전위탁운임 20% 할증 적용), 울산항, 울산신항, 마산항, 광양항, 평택항(안전위탁운임 18% 할증 적용), 군산항, 포항항, 의왕ICD)
- 컨테이너 편도운임 : **7개 기점**(부산북항, 부산신항, 울산항, 울산신항, 마산항, 광양항, 포항항), **4개 장치장**(의왕ICD, 인천항, 인천신항, 평택항)별 운임



- 컨테이너 환적화물 운임 : **5개 종류**(부산신항 내, 부산 북항 내, 부산 신항-북항 간, 인천항, 광양항)
- 40FT / 20FT 운임 구분, 기점별 행선지와 구간거리 표기

안전운임 운임표 고시

■ 시멘트 운임

- 거리별(km), 톤당 운임 표기

■ 부대조항

- [별표1]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 [별표2]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 <참고사항> 거리 측정기준 및 유가 연동방식

안전운임 운임표 예시

■ 컨테이너 운임표

(왕복, 부산북항 기점, 40FT 기준)

행선지	구간거리	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서울 중구	404km	761,826	854,845
대구 중구	115km	309,313	342,201
인천 중구	422km	791,333	884,353
광주 동구	263Km	541,612	604,512
대전 중구	264Km	543,073	606,319
울산 중구	71Km	240,062	264,635
경기 의왕	382km	734,995	828,015

■ 컨테이너 운임표

(왕복, km별, 40FT 기준)

구간거리	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10km	109,537	122,583
50km	195,441	216,046
100km	285,934	315,987
150Km	363,001	402,503
400Km	760,417	853,437
450Km	830,441	923,460
500km	909,010	1,002,030

03 2020년도 적용 안전운임



부산북항 기점, 의왕ICD 장치장 이용

안전운임 운임표 예시

■ 컨테이너 운임표

(편도, 부산 북항 기점, 의왕ICD 장치장 이용, 40FT 기준)

행선지	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서울 중구	495,448	496,989
인천 중구	521,554	623,476
경기 과천	468,638	570,044
경기 의왕	451,460	552,784
경기 양주	534,383	636,483
경기 파주	549,772	652,099
강원 가평	531,880	633,940

■ 컨테이너 운임표(환적화물, 40FT 기준)

구간거리	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부산신항 (남측-남측, 북측-북측)	26,379	30,321
부산신항 (남측-북측)	31,137	35,790
부산북항 (신선대-감만)	25,348	29,136
부산북항 (신선대-기타)	36,907	42,422
부산신항-부산북항	105,908	121,733
인천신항 내	18,189	20,907
광양항 내	24,091	27,691

03 2020년도 적용 안전운임



안전운임 운임표 예시

■ 시멘트 운임표(왕복, km별, 1톤 기준)

구간거리	운송거리(왕복)	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30km	60Km	4,095	4,357
50Km	100Km	5,188	5,519
100Km	200Km	7,876	8,379
150Km	300Km	10,505	11,175
200Km	400Km	13,078	13,913
300Km	600Km	18,713	19,907
400Km	800Km	23,524	25,026

과태료 부과 관련 계도기간 부여

- 전국 17개 특별·광역시자치단체에 관련 공문 발송('19.12.30)
- 계도기간 운영 지침
 - 안전운임 적용대상 : '20.1.1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운송행위
 - 계도기간 : '20. 1. 1부터 2. 29까지
 - 계도기간 중 : 안전운임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대신 시정조치 요구
 - 계도기간 후 : ① 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태료 부과
② 계도기간 중 발생한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Q. 계도기간 중의 지급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20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이루어진 운송행위는
안전운임 지급 대상에 해당

계도기간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안전운임 지급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치 가능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안전운임 지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인지 후 **시정조치**(안전운임 지급)가 수반될 경우 **과태료 미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Q. 운임표에서 정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 운임표 상의 왕복운임 혹은 편도운임의 운송형태는 아래와 같음

(왕복) 기점A → 행선지 → 기점A

(편도) 기점 → 행선지 → 장치장(반납) / 장치장(수령) → 행선지 → 기점

- 왕복 혹은 편도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기점A → 행선지 → 기점B’ 운송 등 운임표에서 정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구간별/거리별 운임표를 참고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름

Q. 복화 운송

적(full) 컨테이너로 출발하여 행선지 도착 후,
공(empty) 컨테이너로 복귀하는 왕복 운송과 달리,

행선지 도착 후 다른 물건을 싣고 적(full) 컨테이너로 돌아오는
복화운송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하여 결정

Q. 단순 공(empty) 컨테이너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안전운임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 컨테이너' 이외의 컨테이너 적재 여부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empty) 컨테이너를 운송해야 하는 경우는 **왕복운임에 준하는
운임**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공 컨테이너 운송 시에도 공휴일/심야 등 할증 동일 적용 필요

Q. 20FT COMBINE 운송(컨테이너 부대조항 제2호 관련)

「2020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 ① 동일 화주, ② 컨테이너 2개의 중량합계(내품+컨테이너) 20톤 미만
- ③ 동일 장소에서 상차, ④ 동일 장소에서 하차

상·하차지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적재 여부와 관계 없이
20FT 컨테이너 운임의 180% 적용 가능

화주가 다른 경우나 상·하차 장소가 다른 경우 등은 20FT 컨테이너
2개의 왕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함

Q. 편도 운임 : 비수도권 행선지로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을 이용할 경우
(컨테이너 부대조항 제29호 관련)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및 일부 강원 지역 80개 편도 행선지별
운임표를 참고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

Q. 편도 운임 : 비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을 이용하는 경우
(컨테이너 부대조항 제15호 관련)

「2020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편도운임은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의왕ICD, 인천항, 인천신항, 평택항)에
공컨테이너를 반납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 한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경우는 왕복운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Q. 화주의 범위 : 국제물류주선

- 수출입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책임을 지고 운송, 보관, 하역 등을 관리하고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주에 해당

◆ 대법원 판례(2013. 1. 24. 선고, 2012도748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는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를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갖고, 자기의 계산으로 그 운임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라는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

- 다만, 국내 운송사업자 허가를 보유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내 운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경우는 운송사업자의 지위로 봄

Q. 화주의 범위 : 선사

운송사에게 운임을 지급하고 운송서비스를 받는 선사는
화주로서 운수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급하여야 함

Q. 운수사업자 간 운임 지급

운수사업자 간 운임 지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수준에서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를 필요

Q. 심야(22:00~06:00) 운행의 기준(컨테이너 부대조항 제8호 관련)

화주의 요청에 의해 상차 완료 후 **심야시간**(22:00~06:00)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화주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심야 할증 적용
운행시간은 상차작업 후 하차 장소로 운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하차 장소에 도착한 시점 사이에 발생한 **실 운행시간**을 인정

Q. 대기시간 산정 기준(컨테이너 부대조항 제9호 관련)

대기시간의 측정 기준은 아래와 같음

- 대기 시작시간 : 화주의 도착 요청시간(요청시간에 늦을 시 도착시간부터)
- 대기 종료시간 : 상차 또는 하차가 완료되어 차량이 이동하는 시간

대기시간의 시작, 종료시점 측정은 당사자 간 합의된 수단을 활용

화주의 대기시간 확인서는 상호간에 협의된 임의 양식 사용 가능

Q. 대기료 부과 기준(컨테이너 부대조항 제9호 관련)

화주의 도착요청시간부터 적용, 40FT / 화주 문전 도착 후의 경우

도착 후 ~ 3시간 : 미 부과

3시간 1분 ~ 3시간 30분 : 20,000원

3시간 31분 ~ 4시간 : 40,000원

Q. 컨테이너 세척 비용 부담주체(컨테이너 부대조항 제24호 관련)

컨테이너 세척비는 컨테이너 소유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지급

(화주가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화주가 차주에게 직접 지급)

Q. 중량물 할증에 해당하는 내품의 무게기준(컨테이너 부대조항 제4호 관련)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게 되는 내품의 경우에 해당

Q. 냉동컨테이너의 발전기, 샤시사용료, 유류비를 운송사가 지급하는 경우 (컨테이너 부대조항 제5호 관련)

운송사가 냉동컨테이너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30% 할증을 원칙적으로 적용

Q. 컨테이너 품목 할증률 상한 계산(컨테이너 부대조항 제18호 관련)

2개 이상의 할증 요인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모든 가산률을 합산 적용하되, 적용되는 각각의 할증률 중 가장 높은

가산률에 50%p를 더한 가산률을 상한으로 함

(예시) $100\% + 30\% = 130\%$ ($100\% + 50\%p$ 상한 이내)

$100\% + 30\% + 30\% = 150\%$ ($100\% + 50\%p$ 상한 적용)

$150\% + 100\% = 200\%$ ($150\% + 50\%p$ 상한 적용)

$40\% + 30\% + 30\% = 90\%$ ($40\% + 50\%p$ 상한 적용)

Q. 유가연동제 관련(참고사항2)

1. 유가 변동으로 인한 운임 변경고시 주체 : 국토교통부
2. 운임 변경 시 계도기간 적용 : 없음
3. 평균 유가 기준 : 한국석유공사 공시가격

Q. 예측 (불)가능한 할증 항목 예시(별표1 부대조항 16,17 관련)

예측 가능한 할증 예시 : 위험물, 냉동/냉장 할증 등

예측 불가능한 할증 예시 : 배차 취소, 대기료 등

Q. 수출입 컨테이너가 아닌 국내 운송 컨테이너의 안전운임 적용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4에 의해 수출입 컨테이너로 안전운임 적용 대상 품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운송 컨테이너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Q. 「2020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

1. 내품 인보이스 가격이 높은 경우 별도의 추가 할증
2. 플렉시백(Flexi Bag) 운송
3. 화주 또는 물류회사가 구축한 CY를 이용하는 운송
4. 운수사업자 간 주선 수수료 및 운임
5. 왕복, 편도 이외의 운송형태
6. 차량 도착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
7. 내수용 컨테이너 운송
8. 철송 운임
9. 1km 미만 셔틀운임

Q. 카고 차량으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의 운임 적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안전운임 적용 대상 품목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Q. 밥테일 운송 할증(컨테이너 부대조항 제11호 관련)

밥테일 할증은 ① 화주의 요청으로 화주 문전에 샤시를 장치하고

트랙터만으로 기점으로 돌아와 ② 왕복운행이 2번 발생할 경우 지급

Q. 항만이 있는 시내 운임 산정방법(참고사항1 다, 라)

항만이 있는 시내 운송운임은 거리별 운임표를 활용하며,
'시내 거리'와 '항만 내 거리'를 합산하여 운임 산정

(예시) 부산북항 → 부산 시내 A 지점 간 왕복운임(40FT)

- ① 부산 북항 내 편도거리 : 3.3km('참고사항1 라'에서 제시)
- ② 북항 게이트 ~ A 지점 간 거리(구간거리) : 10.5km(실측 결과)
- ③ 구간거리 : $10.5 + 3.3 = 13.8\text{km}$
- ④ 소수점 첫째 단위를 반올림한 14km의 40FT 왕복운임 적용

Q. 항만 배후부지 창고 운송 운임

항만 배후부지 운송은 거리별 왕복운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Q. 부산신항 다목적부두(BNMT) 이용 시 환적화물 운임

부산신항 내 다목적부두 이용 운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북측-북측 / 남측-남측 운송구간과 동일한 운임 적용

Q. 해외법인과 계약한 운송의 안전운임 준수 여부

'20.1.1부터 발생한 운송 건에 대해서는 안전운임 지급이 원칙
지난해 선적한 수입화물 등에 대해서는 계약사항 등을 검토할 필요

Q. 화물차주에게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항목(차주 원가항목)

운송사의 위·수탁 차주에 대한 영업 보조 행위의 대가로서
영업용 번호판 이용료, 지입료에 대한 공제는 가능



감사합니다